



제 42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윤건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887호)

2025.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재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수의사의 결격사유 추가 규정	3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윤건영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5. 3. 13.

다. 회 부 일 : 2025. 3.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의사의 결격사유 규정을 두어, 그 사유의 하나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이하 “마약중독자등”이라 함)’를 규정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다른 결격사유로 ‘이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 「의료법」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법」에서는 마약중독자등은 예외 없이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의료인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이는 사기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의사의 결격사유에서 마약중독자 중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제외하도록 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형법」 제34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등을 결격사유에 추가하여 수의사의 자격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동물이 보다 높은 수준의 진료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Ⅲ. 검토의견

1. 수의사의 결격사유 추가 규정

현행법은 마약·대마(大麻) 및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 중독자(이하 “마약류 중독자”라 함)는 수의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수의사법」·「가축전염병예방법」등 수의사 업무와 관련된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는 수의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수의사 직무 수행 여부에 대한 판단과 상관없이 마약류 중독자는 수의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진료비 관련 사기죄를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를 수의사 결격사유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의사가 될 수 없다.	제5조(결격사유) -----
1. 2. (생략)	-----
3. 마약, 대마(大麻),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 중독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	-----.
	1. 2. (현행과 같음)
	3. -----

	----- <단서 삭제>

현행	개정안
<u>문의를 수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u> 4. 이 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동물보호법」, 「의료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형법」 제347조(허위로 진료비용을 청구하여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진료비용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의사 결격사유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제3호 단서에 따라 수의사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는 제5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행법상 마약류 중독자라 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전문 의사가 직무수행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허위로 진료비용을 청구하여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도 수의사 자격 취득을 배제하는 근거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는 원칙적으로 수의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허위로 진료비용을 청구하여 속이는 등 「형법」 제347조(사기죄)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등을 결격사유에 추가하여 수의사의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유지함으로써 동물의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진료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결격사유는 전문자격의 건전성 유지를 통해 궁극적으로 일반 국민을 보호하는 동시에 특정 직종이나 사업영역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동물의료행위의 특수성, 타 전문직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유사입법례로서 「의료법」과 「약사법」은 공통적으로 마약류 중독자를 의료인과 약사·한약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형벌 이력에 대하여는 위반 법률의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음.

[유사 전문직의 결격사유 규정 입법례]

관련 법률(전문직종)	결격사유 규정
「의료법」 [시행 2024. 12. 20.] [법률 제20593호, 2024. 12. 20., 일부개정] (의사·치과의사· 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2. <u>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u> 4. <u>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u>
구 「의료법」 [시행 2023. 9. 25] [법률 제18468호, 2021. 9. 24, 일부개정] (의사·치과의사· 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2. <u>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u>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u>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u>,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약사법 (약사·한약사)	제5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다 3. <u>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u> 5.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한편,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현행법 제32조제2항제2호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였을 때’를 수의사 면허효력의 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¹⁾ 진료비 허위 청구를 별도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대한 정부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① 마약류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엄격한 마약류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마약류 중독자는 예외 없이 수의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②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진료비 관련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수의사의 윤리 의식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사기죄를 범한 경우를 수의사 결격사유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대한수의사회는 ① 마약중독자를 예외 없이 수의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의하지만, ② ‘허위로 진료비용을 청구하여 사기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수의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은 동물의료의 성격과 체계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진료비 허위 청구를 엄격하게 제재하는 사람 의료와 다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1) 「수의사법」 제32조(면허의 취소 및 면허효력의 정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진료기술상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하였을 때
2.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였을 때

문 의 처
02)6788-5424